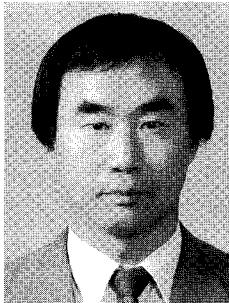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의 발전 방향



권 영 구 과장
공업진흥청 전기용품 안전과

국제동향

제8차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서가 93년 12월 15일 타결이 선언됨에 따라 선언된 협상서에 농산물과 관련된 협정이 외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to Subsidies and Counter Vailing Measures),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등 기술과 관련된 4개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우리의 관심은 TBT협정은 Tokyo Round에서 각국의 기술규정 표준화, 적합성 판정절차등이 공산품의 국제유통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된 취지하에서 협상이 체결되었으나 TBT가 다른 비관세 장벽인 쿼터, 수량, 제한, 수입절차 등에 비하여 기술적인 사항과 밀접하고 복잡하

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장벽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판정하는데 어려운점이 많았다.

특히 GATT협정 20조 및 21조와 TBT협정의 예외조항을 준용하여 위생, 환경,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해당분야에 대한 규제수단을 쉽게 적용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선진공업국에서는 TBT협정을 효과적인 무역제한 도구로 오용 또는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80년대 이후부터는 TBT협정과 관련된 통상마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UR협상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과 함께 TBT협정 내용이 보완되어 체결되었다.

향후 WTO 또는 GATT의 모든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TBT협정을 준수하여야 하게 되었다.

TBT협정의 주된 취지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선진공업국에서 환경보호,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등의 이유로 오용할 경우 TBT협정은 여전히 무역장벽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기술의 발달과 병행하여 무역분쟁을 가중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예견된다.



공업진흥청 청사 전경

전기용품의 안전관리규제와 UR협정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규제는 인증의 형태를 빌려 규제하는 것이 통례다.

인증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에는 표준이나 기술규정의 설정과 적합성 판정을 위한 시험, 검사가 포함되며 인증심의 주체, 인증수단, 시험검사를 행하는 기술적 방법에 의하여 인증제도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규제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전기적인 위해로 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어 GATT협정 20조 및 21조와 TBT협정의 예외조항을 준용하여 정부기관, 중립적인 민간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회사등이 인증실시에 대한 주체기관이 되어 전기용품 안전관리규제와 연관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인증확보 수단으로서 법적인 규제, 보험에 의한 차등 적용등의 방법에 의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마다 서로 상이한 기준과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TBT협정은 중앙정부간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연방정부를 가진 국가인 경우 지방정부에 대한 이행의무가 불완전하며 또 정부부처가 아닌 비정부기관이 인증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경우 TBT협정의 의무가 단지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밖에 없어 중앙정부차원의 TBT 협정 이행에 어려운점이 있었다.

전기용품의 국제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제표준화의 필요성은 급증하였으나 80년대 초반까지 IEC규격에 규정된 내용들이 제품의 호환성, 단위와 용어의 통일에 치우쳐 있어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등을 평가하기에는 불충분하였고 이때까지 IEC에서 별간한 규격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해 IEC규격을 국제교역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하였다.

특히 세계최대인 단일시장인 미국이 1989년 현재 약 89,000 종류의 규격을 제정하고 있었으나 전기 관련 규격으로는 IEC규격을 준용한 것은 전무할 정도로 IEC규격을 채택하는 것이 미온적이어서 국제 표준에 의한 기술장벽을 제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기술장벽은 생산 및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표준화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생산이나 유통과정 중에 어떤 강제규정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면 표준화는 자동적으로 강제성을 띠어 기술장벽으로 둔갑하게 되고 기술장벽에 대한 대상범위 설정이 매우 애매하게 된다.

“민간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제도적인 업무는 민간기구로 권한을 위임하고 정부는 단지 조정자의 역할이 바람직하며, 현재 전기용품 안전관리협회의 기능을 더 한층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 제도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의적 표준은 강제조건이 아니므로 꼭 이 표준에 맞추지 않더라도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하겠으나 어떤 영향력있는 보험회사가 자국내 표준과 일치하는 상품에 한하여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면 이와같은 임의의 표준도 실질적으로 생산자 판매를 구속하게 되어 기술장벽으로 둔갑하는 결과를 낳았다.

많은 국가들이 기술장벽을 자국의 수입규제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자간의 기술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증대와 경제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술장벽을 모두 제거하는데 대한 자국의 이해가 분명하지 않아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의 발전방향

전기용품안전관리규제와 관련된 기술장벽과 관련하여 우리가 채택 할 기본적인 입장은

첫째로 표준화 제도와 강제수단에 의한 안전관리 규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조화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농산물이나 서비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산품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하에서는 전기용품과 같이 기술장벽 관련분야의 국제적 부합화가 이분야 생산에 큰 이익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외국시장에 대한 상품규격이 통일됨으로써 반사적으로 전기용품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교역 환경이 개방화 됨에 따라 전기용품 분야에 있어서 세계각국 상호간의 교류촉진을 증진하고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기술기준을 국제규격 즉 IEC규격에 부합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IEC 65(가정용 전자기기) 등 102개 IEC규격을 채택하고 IECEE(국제전기기기 상호인증회의)에 의한 CB성적서 인증범위도 IEC 65등 49개 규격을 채택하고 있으나 국제간에 인증업무를 활성화 해 나가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아 전기용품 기술전문위원회(TC) 구성·운영 등으로 전기용품기술기준을 지속적으로 국제규격(IEC) 및 선진국규격(UL, CSA)과 부합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술장벽과 관련되어 선진국간의 통상마찰이 점증되고 있어 우리나라로 곧 이들간의 기술장벽에 대한 분쟁이 예견되므로 외국의 전기용품안전관리규제에 관한

제도파악은 물론 통상마찰사례, 분쟁조정등을 적극적으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IECEE제도에 의한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 범위를 확대시키고 ISO 9000시리즈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인증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신기술개발과 사용자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제품이 소형화, 경량화 추세에 따라 전기적 안전도가 더욱더 요구되는 바 선진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연물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적인 특성이 만족된 절연물 사용으로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해야 할 것이며 민간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제조업 등록, 형식승인등의 제도적인 업무는 민간기구로 권한을 위임하고 정부는 단지 조정자의 역할이 바람직하며, 규정하고 있는 전기용품도 점차적으로 1종에서 2종으로 이전하여 민간자율적인 제3자 인증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의 기능을 더한층 강화하여 외국유사기관과의 정보·자료등의 교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적인 변화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선진국수준의 전기용품안전관리규제의 육성을 물론 효율적인 안전관리제도 확산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